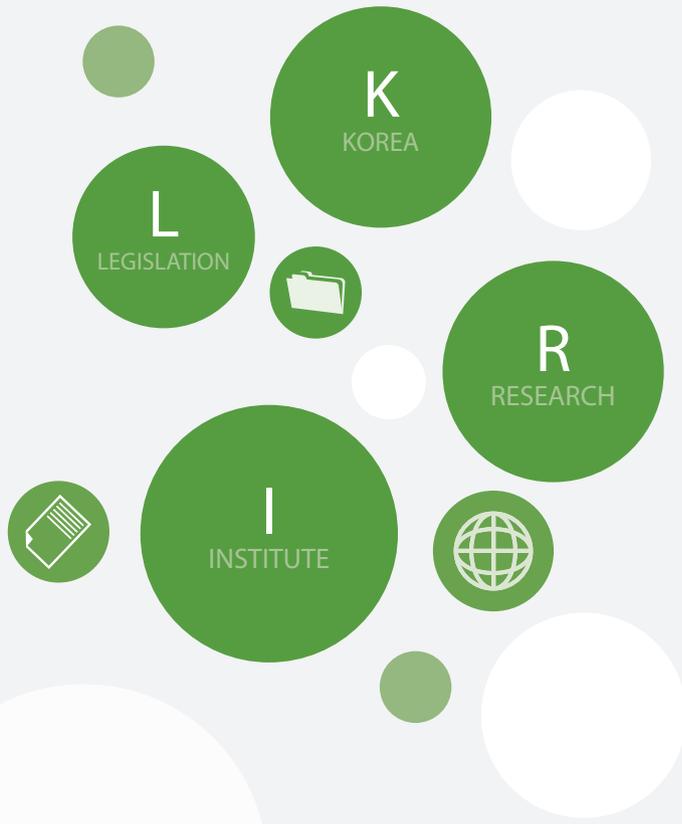


프랑스 소비자법제 분야 입법평가 사례 분석

왕승혜



프랑스 소비자법제 분야 입법평가 사례 분석

연구자: 왕 승 혜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

CONTENTS

Issue Paper

I. 개요 04

II. 소비자집단소송 분야 06

- 1. 입법상황 및 진단 06
- 2. 입법을 통한 개입의 정당성 07
- 3. 입법 목적 08
- 4. 가능한 입법방안 09
- 5. 입법영향 09

III. 소비자계약 분야 12

- 1. 입법상황 및 진단 12
- 2. 입법을 통한 개입의 정당성 13
- 3. 입법 목적 13
- 4. 가능한 입법방안 14
- 5. 입법영향 14

IV. 소비자신용 분야 16

- 1. 입법상황 및 진단 16
- 2. 입법 목적 16
- 3. 가능한 입법방안 17
- 4. 입법영향 17

V. 소비자법의 집행을 위한 행정당국(DGCCR)의 감독조치와 행정작용 방식의 현대화 19

VI. 요약 및 시사점 25



I. 개요



▶ 입법평가서의 취지

- 이 문서는 프랑스 소비법전의 개정안에 관한 입법영향평가서¹⁾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임. 이 법안의 목적은 프랑스 소비자법을 개선하고 새로운 유럽공동체법 및 유럽법원의 판례와 조화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또한 소비자법 영역에서 법의 일반원칙의 유효성을 보장하고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행정 기관이 발령하는 규제 조치의 효과성을 보장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음. 이러한 입법적 조치는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인바, 소비는 국민경제의 전통적인 성장의 동력이자 구성요소이며, 가계의 소비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기 때문임

▶ 주요 내용

- 법안에 포함된 입법적 조치들은 다음과 같은 5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1) Assemblée nationale, Étude d'Impact, Projet de Loi relatif à la consommation, 30 avril 2013. (프랑스하원, 소비자법 관련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평가보고서, 2013년 4월 30일자). 이하 본문의 내용은 이 입법영향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번역하여 정리함.

- 〈1〉 프랑스법상 집단소송 절차의 도입
- 〈2〉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2011년 10월 25일자 유럽지침 제2011/83/EU호의 이행을 위한 입법사항(소비자계약 분야)
- 〈3〉 소비자 정보의 개선과 소비자계약에서 소비자의 권리 강화
- 〈4〉 공산품의 원산지 표시
- 〈5〉 소비자보호의 책무를 담당하는 행정당국의 감독조치와 관리방법과 행정작용 방식의 현대화

➤ 주요 방침

- 소비자 보호를 향상시키는 목적은 입법안의 내용에 총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그 내용의 상호연관성과 통일성이 보장되어 있음. 그러나 이 영향분석서에서는 입법안의 내용을 빠짐 없이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각각의 입법사항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였음
- 이 영향분석서의 부록에 포함된 표는 유럽공동체지침의 전환입법을 통한 영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소비자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제재와 관련한 사항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음²⁾

2) 원문 부록에 포함된 표는 해당 원문을 참조.

II. 소비자집단소송 분야



1. 입법상황 및 진단

- 프랑스는 약 30년 전부터 집단소송을 도입하기 위한 실무연구반을 구성하였음. 실무연구반은 2005년 봄에 집단소송절차를 프랑스에 도입하기 위한 조건을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음. 이 전문가 그룹은 2005년 12월 16일에 경제 금융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소비자, 전문가의 대표들 및 법률가로 구성된 이 실무연구반은 프랑스에 고유한 법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음. 그러나 2008년 이후 여러 차례 제안된 법률안은 입법이 되지 못하였음
- 소비자법 분야의 집단소송제도 현황
 - 소비자 계약의 형성 및 이행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은 상대적으로 빈번히 매우 많은 수의 소비자가 관련될 수 있음. 이러한 분쟁에 관련된 소송가액이 소액임을 감안할 때, 소비자는 종종 법원에서 개별적인 소제기를 포기함. 그러나 금융서비스, 에너지, 전자통신서비스와 관련한 분야에서는 소비자가 필수재를 이용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비자 소송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분야임³⁾
- 경쟁법 분야의 소송법제의 현황
 - 경쟁법과 관련한 분야에서 소비자소송의 목표는 소비자단체가 카르텔을 금지하고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통제하며 불법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규칙 위반행위와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3) 프랑스 소비자법전에 도입된 소비자집단소송제도에 대해서는 왕승혜, 프랑스의 집단소송제도의 입법에 관한 연구, 소비자법연구, 제3권제2호, 2017.9. 참조

- 불공정관행은 특히 네트워크 산업(유선통신서비스, 가스 및 전기, 철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완화 운동의 결과로 더 증가하였음. 이러한 기업가적 자유는 고객에 대한 더 큰 책임감과 병행해야 함. 가격담합행위는 예를 들어 경쟁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함.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관행이 인위적으로 약 20%의 가격 인상을 일으킨다고 믿음. 이 계약에 포함된 제품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거나 구매를 포기함으로써 소비자는 손해를 입게 됨
- 유럽법은 EC 반독점법(EC 조약 제 81 조 및 제 82 조)의 위반행위로 인해 시민이 손해를 입었을 때, 손상을 입힌 사람으로부터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도록 보장함. 2001년 9월 20일 “Courage et Crehan” 판결과 2006년 7월 13일의 “Manfredi” 판결에서 유럽법원(CJEU)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의 권리는 유럽공동체법에 의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고 선고하였음
- 경쟁 당국이 취한 제재 조치는 소비자가 겪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공정 관행을 확인하고 제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이때 개별 소비자의 손실과 피해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소송비용, 기대이익, 구제절차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단독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집단적 구제절차의 유용성과 필요성이 인정됨

2. 입법을 통한 개입의 정당성

- 프랑스법상 <l'action de groupe>은 ‘집단소송’을 의미함. 2005년 4월에 프랑스 정부는 집단소송법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하여 정부제출입법안을 작성하기 위한 작업을 하였고, 동년 12월에 연구결과를 정리한 정부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당시 연구와 관련하여 ‘집단소송’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논의도 부분적으로 정리되었는데, 2006년 프랑스 법무부 산하의 ‘법령용어 및 새로운 용어(신조어) 특별위원회(la commission spécialisée de terminologie et de néologie en matière juridique du ministère de la justice)’는 프랑스어의 ‘l'action de groupe’라는 법률용어가 영어의 ‘class action’에 상응하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에 해당한다는 공식적인 의미해석(개념정의)을 프랑스 정부 관보에 공지하였음⁴⁾

4) 프랑스 정부관보, 2006년 5월 13일자(JORF n°111 du 13 mai 2006 page 7072, texte n° 129), Expression

- 이 관보에 공지된 의미해석에 따르면 집단소송이란 “일부 외국의 국가에서 민사소송절차에 의해서 허용되고 있는 소송의 유형으로서, 1인 또는 수인의 청구인(*le requérant*)⁵⁾이 사전에 소송수행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에 속하는 자들을 위하여(그들의 이익으로) 사법(司法)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수단)”을 뜻함
- ‘l’action de groupe’이라는 용어가 특정한 소송유형을 의미한다면, 프랑스 민사소송법에서 강학상으로 사용되는 ‘다수당사자 소송’이라는 개념은 ‘le recours collectif’임
- ‘les actions collectives’는 복수로 사용하는데, 이는 단체소송의 유형은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금지청구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임. ‘l’action de groupe’는 통상 피해자 집단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총원을 상정하고, 집단구성원 사이에 공통되는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뜻함

3. 입법 목적

- 다음 단계는 입법적 방법, 그리고 합일되지 않는 수단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임. 현실 인식을 통해 제도적인 흠결 상황이 파악되었고, 이러한 법제도적인 흠결을 메꾸기 위해서는 소비자소송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계에서 우려의 입장이 계속해서 표명되었고 기업에게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고 기업의 존속력을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어왔음⁶⁾

recommandée par la Commission générale de terminologie et de néologie et publiée au Journal officiel du 13 mai 2006, «Voie ouverte dans certains pays par la procédure civile, permettant à un ou plusieurs requérants d'exercer une action en justice pour le compte d'une catégorie de personnes sans en avoir nécessairement reçu le mandat au préalable»

5) 프랑스 법률용어에서 제1심 민사소송의 원고는 ‘le demandeur’, 항소심에서는 항소인 ‘l’appelant’, 다시 상고심에서는 상고인을 ‘le demandeur’ 라고 부름. 제1심 민사소송의 피고는 ‘le défendeur’, 항소심의 피고는 ‘l’intimé’라고 함. 형사소송에서도 심급에 따라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는데, 제1심 형사소송 중 경죄법원과 경찰법원의 피고인은 ‘le prévenu’라고 하고, 중죄법원의 피고인은 ‘l’accusé’라고 부름. 행정소송의 원고는 ‘le requérant’ 이라고 부름.

6) M.-A. FRISON-ROCHE, Les résistances mécaniques du système juridique français à accueillir la class action : obstacles et comptabilités, LPA 10 juin 2005. - PICOD, L’action de groupe : âge d’or des implants ou modèle français ?, D. 2006. 2865; STRICKLER et BORÉ, Faut-il avoir peur de l’action de groupe ?, RDA févr. 2014. 15; 이 문헌에 대한 소개는 Dalloz, Répertoire de procédure civile, [3]에서 재인용

- 또한 이질적인 제도의 충돌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고, 프랑스의 사법제도의 일반원칙들과 모순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음⁷⁾

4. 가능한 입법방안

- 소비자집단소송은 2단계의 절차로 구성되어 있음. 1단계의 소송에서 “사업자가 상당한 다수의 소비자에 대하여 이들에 공통하는 사실상 및 법률상 원인에 기초한 금전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어서 2단계 소송에서 “개별소비자의 채권확정절차”를 간이절차로 진행함. 제2단계에 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액에 따른 개별적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게 됨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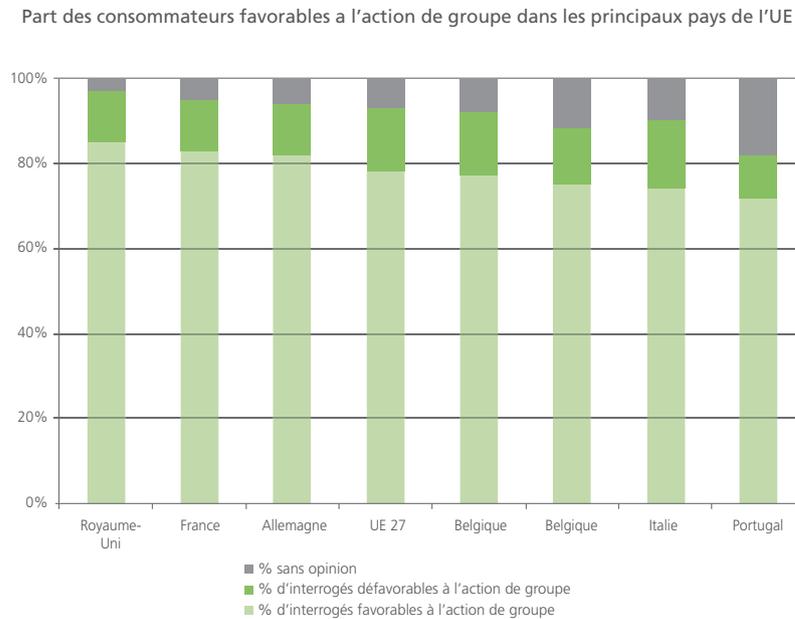
5. 입법영향

-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 집단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의 과다가 문제가 되었으나, 입법안은 소비자단체에 대해서만 제소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소송비용 부담이 경미하도록 설계하고 있음. 경제분석자문위원회(Conseil d'analyse économique: CAE)에 제출된 보고서 ‘*La protection du consommateur : rationalité limitée et régulation*’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음⁹⁾
- 법제 도입에 관한 찬반 의견조사
 - 소비자집단소송의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났음. 찬성의견의 비율은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는 EU 27개국 평균보다 높으며 스페인 등 이외의 국가는 EU 평균보다 찬성의견의 비율이 낮게 나타남

7) BRUNENGO-BASSO, L'émergence de l'action de groupe, processus de fertilisation croisée, préf. PRIETO, 2011, PU Aix-Marseille, no 274; 이 문헌에 대한 소개는 Dalloz, Répertoire de procédure civile, [3]에서 재인용

8) <http://www.justice.gouv.fr/le-ministere-de-la-justice-10017/action-de-groupe-27534.html>

9) (역주) GABAIX Xavier, LANDIER Augustin, THESMAR David, MONGIN Philippe, TIROLE Jean, La protection du consommateur : rationalité limitée et régulation. 2019.9. 원문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함 <http://www.ladocumentationfrancaise.fr/rapports-publics/124000494/index.shtml>



〈그림〉 CAE보고서 : *La protection du consommateur : rationalité limitée et régulation*

–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분석하기 어려움. 이에 관한 보고내용은 작성된 바 없음. 경제분석자문위원회(Conseil d'analyse économique: CAE)의 보고서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하지 않고 있음. 다른 한편 집단소송의 도입과 기업의 경쟁력 약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보고서 내용 또한 이제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는 점을 영향분석서에 명시함
- 유럽연합 회원국 중 단체소송이 도입된 나라는 8개 국가이며, 독일,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임. 각 나라별로 소송절차의 내용은 상이함.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도 모두 다름.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야기하였다는 보고는 없음. 이에 관한 내용은 유럽집행위원회가 2008년 발표한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음(*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collective redress mechanisms in the European Union*).¹⁰⁾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론을 내리고 있음

10) (원주) Rapport de la Commission de 2008,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collective redress mechanisms in the European Union, p. 130.

- 첫째, 이미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한 회원국들에서, 집단소송절차는 기업에게 보험 또는 사법절차와 관련한 과도한 비용증가를 초래하지 않음
- 둘째, 이미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한 회원국들에서, 집단 행동 절차로 인해 기업이 파산한 사실이 없음
- 셋째, 어떤 한 회원국에 집단소송절차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러한 절차가 없는 다른 회원국으로 투자가 이전한다는 사실 사이에는 명확한 연관성이 없음

〈유럽연합의 입법 활동〉

유럽집행위원회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위원회는 소비자법과 경쟁법 분야에서 유럽의 집단소송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수년 동안 노력해 왔음

- 2005년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기본방침(정책녹서: Green Paper)을 채택했으며, 2008년에는 집단소송에 대한 장을 포함한 백서를 채택하였음
- 2008년에는 소비자를 위한 집단손해배상에 관한 기본방침(정책녹서: Green Paper)을 출간하였음
- 부의장인 Reding과 Almunia, 그리고 Dalli 집행위원은 2010년 10월 12일 위원회 정책토론에서 집단소송에 관해 논의했음. 공공의견수렴은 2011년에 실시된 논쟁을 통한 결과임

Ⅲ. 소비자계약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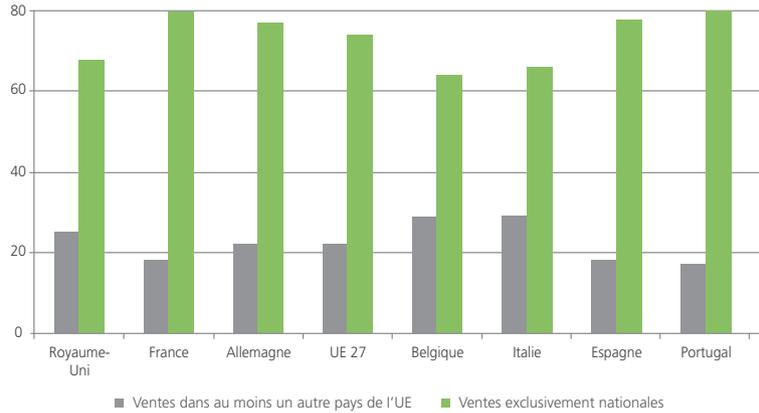
: 유럽지침 제2011/83/EU호의 제3조부터 제5조, 제8조, 제10조

1. 입법상황 및 진단

- 2008년 10월 8일 유럽 집행위원회는 2004년 제정된 소비자지침에 대한 검토 보고서와 2007년 2월에 발표된 소비자 보호법의 개정을 위한 녹서와 지침안을 제시했음
- 개정안은 유럽법의 원칙인 보충성의 원칙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유럽역내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경쟁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임. 특히 공통된 전자상거래지침을 제정하여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유럽집행위원회의 조사 결과 회원국의 국내 전자상거래와 회원국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임¹¹⁾

11) (역주) Eurobarometer report, Attitudes des détaillants à l'égard du commerce transfrontalier et de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http://ec.europa.eu/commfrontoffice/publicopinion/archives/flash_arch_360_345_fr.htm

Attitude des détaillants à l'égard du commerce transfrontalier dans les principaux pays de l'UE



<그림> 2011년도 유럽집행위원회 전자상거래 소비자 인식 조사자료

2. 입법을 통한 개입의 정당성

- 2011년 10월 25일 유럽 의회와 유럽 이사회의 소비자 권리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11/83 / EU)은 2014년 6월 발효되기 위해서 늦어도 2013년 12월 13일까지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전환되어야 함
- 법적 목표는 전자상거래에 적용 가능한 원격판매법과 상업 시설 외부에서 체결된 계약을 포괄하여 판매장소에서 체결되지 않은 계약을 규율하는 규칙을 개정하는 것임. 현재 소비법전에서 원격판매와 영업장소 외에서의 계약에 대해서는 특별 규정이 적용됨

3. 입법 목적

- 실제로 입법안의 목표는 지침에 의해 정해진 목표임. 즉 상업 시설 외부 또는 상업 시설 외부에서 계약 체결이 끝나기 전에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개선하여 요건사실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쟁점임

4. 가능한 입법방안

- 유럽지침이 최대한의 조화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내법의 입법을 통한 방안은 제한적임
- 유럽지침 2011/83의 프랑스 국내법으로의 전환은 소비법전의 제1권 (법률부분)의 상당한 개정을 수반함. 유럽지침이 동일한 장에서 정보와 관련된 규칙 및 원격계약과 영업장소 외부에서 체결한 계약의 철회권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 방식은 소비법전의 구조에 영향을 미침
- 유럽지침은 원격판매와 영업장소 외부에서의 판매 규정을 통합하고 있음. 그러나 이제까지는 분리된 지침에 의해 규율되었음. 지급, 인도 및 위험 전가에 관한 지침의 조항을 변경한 제4항은 소비자 계약에서 선금 및 선금 지불에 관한 규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과세 조치로 보완됨
- 또한 지침 2011/83의 제2조에서는 소비자의 개념을 정의함. 소비자 정의 조항을 도입 할 때의 다양한 함의는 이 영향평가서의 <부록3>에 요약되어 있음

5. 입법영향

- 소비자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 판매 시점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정보가 개선됨
 - 원격계약(본질적인 주요 특성, 가격, 지불 조건, 계약 이행 등)이 종료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보다 완전한 정보가 제공됨
 - 원격계약이나 전자상거래를 통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계약 철회권이 계약 집행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14일(현재 7일) 동안 철회할 가능성을 가지게 됨
 - 계약 해지의 권리를 행사할 경우 (원격계약이나 전자상거래 계약의 경우) 또는 계약의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모든 유형의 계약의 경우) 계약 해지를 위한 더 많은 보호 조건을 규정함. 요컨대 다양한 조치를 통해 더 나은 권리 보호가 이루어질 것임

- 기업에 미치는 영향

- 기업은 원격계약이나 전자상거래를 통해 계약을 할 때 이미 소비법상 여러 가지 의무를 지고 있음. 이러한 의무는 지침의 개정에 의해 강화 될 것임
- 그러나 기업을 위해서도 입법안을 통한 개정은 긍정적인 이익이 있는데, 곧 기업의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이 단순화된다는 것임. 실제로 원격계약이나 전자상거래 계약에는 공통 규칙이 적용되는 반면, 이 두 가지 상업활동은 각각의 법률에 의해 규제되었음
- 지침의 입법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적용 가능한 업무를 조화 시킴으로써 국경 간 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임.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조문은 특히 전자상거래를 통한 프랑스 기업의 유럽 내 국경 간 판매량 및 재정적 중요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함

- 행정과 예산에 미치는 영향

- 행정에 미치는 특별한 영향은 없으며,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IV. 소비자신용 분야



1. 입법상황 및 진단

- 2008년 4월 23일자 소비자신용협약에 관한 유럽공동체지침 제2008/48/EC 호를 프랑스 국내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정한 2010년 7월 1일자 법률 제2010-737호는 경과규정에 차등을 두어 2010년 9월 1일과 2011년 5월 1일에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음
- 이 법률은 소비자 신용에서의 소비자정보(신용대부 광고규제 강화, 계약전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신설, 채무자(차용자)가 부담하는 의무에 대한 설명의무), 소비자신용계약의 체결과 이행 단계에서의 관리(상환능력 분석, 신용계약 철회 기한, 채무자(차용자)의 지급불능에 대한 관리, 채무상환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함
- 이 법률은 유럽지침을 프랑스 국내법으로 이행하는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소비자단체와 국회의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프랑스 국내법의 불비된 입법사항들을 보완하였음
 - 그러나 법률이 시행된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음

2. 입법 목적

- 일명 “Lagarde”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최근 상당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졌음(형식주의에 대한 존중, 오인가능성 있는 광고행위의 방지). 특히 1천유로 이상의 소비자신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방식) 대신 총액대출(총액으로 차용액을 대출받아 원금과

이자를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이 법안의 제3장에 입법 개선안이 포함되어 있음

3. 가능한 입법방안

- 입법적인 개선 방안은 다른 대체적인 방안, 예를 들어 CCSF(금융정책자문국)이 관여하는 사업자 자율규제 방식과 같은 대체적인 방법은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법률의 개정을 통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제안된 개선 방안은 현행 소비자법전 제3권 제1편 제I장(chapitre I du titre I du Livre III)에 포함된 규정들을 보충하는 규정들인바, 입법 방안은 위계적으로 동등한 법률 규정의 내용이 삽입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법률 규정 문언과의 조정을 필요로 함
- 개선 방안의 첫 번째 조치는 신용대부업을 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1천 유로 이상의 소비자 신용대부를 판매하는 경우 실제로 소비자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총액대출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음

4. 입법영향

- 소비자 및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 첫 번째 조치는 1천 유로 이상의 신용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가 한도대출 방법이 아니라 총액대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적인 신용계약 방법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안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함. 이와 같은 대체적인 신용계약 체결방법에 대한 설명의무는 “라 가르드 법률(la loi Lagarde)”에 도입된 내용을 보다 더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임
 - 실증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총액대출방법으로 신용계약 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신용계약이 체결되는 현장에서 경험적으로 조사한 결과 한도대출을 판매하려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총액대출방법에 대한 설명이 더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관행이 정착된다면 소비자들이 한도대출 방법으로 신용계약을

체결할 때 보다 총액대출 방법으로 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더 낮은 대출총액으로 신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두 번째 조치는 신용대부업자들이 한도대출 계약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 중 "현금잔고(réserve d'argent)"와 "신용잔고(réserve de crédit)"를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법문에서 두 용어를 모두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임. 두 용어는 한도대출 계약의 실제 내용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임

-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신용대부회사 및 신용중개거래회사는 2010년 7월 1일 법률을 이행하기 위하여 회사의 운영 및 판촉 방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 이러한 노력은 각 회사의 업무량과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을 야기하였음. 신용회사의 정보처리와 관련한 업무가 증대되었고, 신용계약의 제공과 고객에 대한 우편 통지와 관련하여 업무량이 증가하였으며, 회사 내부 업무 체계의 개편과 직원 재교육이 필요했음. 앞서 언급한 애링(le rapport Athling)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부담에 할당된 총 예산이 2억 6000만 유로이며 주로 전문신용기관이 부담하였음(85%)
-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입법안의 도입으로 인한 영향은 업무량과 비용의 관점에서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어야 함. 다만 신용대부 계약 체결 시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에 관한 소비법전 제L.311-10조 규정을 이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법안의 수정이 필요함

- 행정과 예산에 미치는 영향

- 행정과 예산에 미치는 특별한 영향은 없음

V. 소비자법의 집행을 위한 행정당국(DGCCRF)의 감독조치와 행정작용 방식의 현대화



▶ 제25조~제52조 : DGCCRF 집행공무원에게 부여된 권한 확대

- 입법안은 프랑스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DGCCRF)의 집행공무원이 제품의 안전성 및 적합성을 통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의 조항을 제안함
 - 첫째, 집행공무원의 조사 권한과 개입 권한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
 - 둘째, 시장 감시 감독에 관여하는 주체 간의 협력을 강화함

▶ 제25조 :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DGCCRF 관리 조치 강화

1) 입법상황 및 진단

- 전자상거래는 소비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되었음. 최근 수년간 전자상거래분야의 급속한 발전은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중적인 관점에서 법적 체계의 적응을 필요로 함
 -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사업자를 위해서 전자상거래의 신뢰성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 전자상거래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
 - 원격거래 및 전자거래연합(la Fédération de la vente à distance et du e-commerce : FEVAD)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부분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성장률이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연도	전자상거래매출규모		영업활동 중인 사업자의 사이트	
	유로	성장률	수	전년대비 성장률
2011	37.7	+21.6%	100,400	+22.6%
2010	31	+24%	81,900	+27.8%
2009	25	+25%	64,100	+35.5%
2008	20	+28%	47,300	+33%
2007	15.6	+34%	35,500	+55%
2006	11.6	+38%	22,900	+46%

- 2011년 10만개 이상의 온라인 영업망(사이버몰)에서 377 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온라인으로 거래한 프랑스 소비자는 2012년 1/4분기 말 현재 3천백만 명에 상당함. 2003년에 온라인 영업망의 수가 5,800개인 것과 대비하여 20배 성장함

- 전자상거래 관련 불법영업행위 단속의 어려움

- 국외에서 활동하는 영업망이 증가하면서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영업행위를 단속하는 일이 어려워짐. 사이버몰 영업자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정을 고려할 때, 온라인 영업망을 기술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 온라인호스트)에게 불법영업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2) 입법 목적

- 사이버몰의 불법적인 내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제소권을 인정함

- 입법안은 프랑스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DGCCRF)으로 하여금 법원에 제소하여 법원의 금지명령을 발령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이를 통해 사이버몰의 불법적인 내용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불이익이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차단하고 손해발생이 중단되도록 함
- 그러나 입법안은 DGCCRF가 호스팅사업자(웹검색업자)에게 직접 금지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입법안은 현행법에서 개인(私人)이 각자 개별적으로

법원에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DGCCRF가 법원에 금지명령을 발령하도록 신청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임. 그리고 입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절차는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법령을 위반한 불법행위에만 국한되어 있음

- 2011년 4월 Corinne Erhel과 Laure de la Raudière는 망중립성에 관한 보고서를 프랑스 하원에 제출하였음. 이 보고서의 제4번 권고안의 내용은 필요한 차단 조치를 발령하기 위해서 ‘법원이 체계적으로 관여하도록 하는 절차’를 도입하였음. 이러한 방안은 표현의 자유를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한 것임. 소비법전과 관련한 이 입법안의 내용은 DGCCRF가 법원을 통해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의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절차는 의회보고서 권고안의 방침과 일치함
 - 이와 같은 DGCCRF의 개입 조치는 소비법전 제1권에 규정된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목적 뿐만 아니라, 제2권에 규정된 제품의 적합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동일하게 요구됨
- 프랑스의 국가정보자유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CNIL)와 DGCCRF의 상호협력을 강화할 필요성
 - DGCCRF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정보자유법을 동시에 위반하는 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CNIL에게 통보하여 CNIL이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발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스팸메일을 이용한 판촉행위 규제 강화

3) 가능한 입법방안

- 입법안은 프랑스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DGCCRF)의 공무원이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사이버몰의 불법 내용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입법안은 새로운 위반행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입법안의 내용은 2004년 6월 21일자 디지털경제에서의 신뢰에 관한 법률 제2004-575호(la loi n° 2004-575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en l'économie numérique: LCEN)의 규정과 동일함

- 제28조 : 소비자계약에서 남용적 조항에 관한 대응조치 강화
- 제53조~제57조, 제63조 : 소비자의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조치의 도입
- 제58조~제60조 :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조치의 도입
- 제61조 : 지급기한에 관한 규정 위반 시 행정상 제재조치의 도입

1) 입법상황 및 진단

- 지급기한이란 공급자로부터 물품대금청구서(la facture)가 발급된 때 또는 물건이 인도된 때로부터 실제로 상인인 거래 상대방에 의해서 지급이 이루어진 때까지의 기간을 말함. 지급기한을 관리하는 것은 회사자산을 관리하고 최소운용자본을 조달하는 데 중요함
- B2B 신용(기업상호간 신용대부)은 회사의 주요한 자금 조달의 원천임. 2011년에는 6천억 유로에 상당함. 단기 은행 대출 금액의 약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프랑스 국내에 소재하는 기업에 의한 총 은행 대출 금액의 73%에 상당하는 금액임
 - 프랑스 경제부처 재무담당국의 2012년도 ‘지급기한보고서’에 따르면,¹²⁾ 2010년까지 결제 기간은 현저히 축소되었으나, 2011년에는 둔화되었음. 수급자 지급기한은 2010년에 45일이었던 것과 대비하여 2011년에는 44일이었으며, 공급자의 지급기한은 2010년에는 55일이었으나 2011년에는 53일이었음
- 50명 이상의 종업원 규모의 500개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2012년도 Arc-Ifop 기업지표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11년도에 채권회수, 재무 및 자금조달의 문제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은 54%였음. 프랑스는 북부 지역 유럽 국가 중 지불기한의 측면에서 2012년 1/4 분기 동안 독일과 스웨덴에 뒤이어 3위에 해당하며, 독일과 스웨덴은 평균 지급기한이 35일로 가장 짧았고, 그 다음으로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위스(36일, 37일, 40일) 순이었음¹³⁾

12) (譯主) 2014, 2, 공간된 보고서는 다음을 참조.

https://www.tresor.economie.gouv.fr/Ressources/8905_rapport-2013-de-l-observatoire-des-delais-de-paiement

13) (원주) 자료 출처: Institut Intrum Justitia.

- 사법부에 미치는 영향

- 위반행위에 대한 소송건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법행정의 부담경감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한일 것이라고 판단됨

- 국내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

- 행정제재에 관련된 개정입법안은 상법전 제4권에 도입될 예정임. 제L.441-6조와 제L.443-1조임

➤ 제61조(I, 1°, 2°) 및 제62조 : 공급자와 유통업자 사이의 계약체결에 관한 규정 위반 시 행정상 제재조치의 도입

➤ 제64조~제67조 : 소비자법 위반 시 형사처벌의 규정의 도입

1) 입법상황 및 진단

- 기망행위로 인한 경범죄(輕犯罪)행위(le délit¹⁴⁾ de tromperie)에 대한 처벌의 수준은 1978년 이후 재평가되지 않았음. 현행과 같은 처벌의 수준은 역지적 효과가 거의 없으며, 위법행위로 인한 불법적 수익의 총액과 비교할 때 균형을 상실함

2) 입법을 통한 개입의 정당성

- 현행 소비법전에 규정된 사기죄와 중사기죄(重詐欺罪)에 대한 처벌규정은 아래와 같음
 - 사기죄의 경우 소비법전(제L.213-1조)에 따라 행위자가 자연인인 때에는 2년 이상의 금고형 및 37,500 유로의 벌금형을 병과함. 형법전의 규정에 따라 자연인과 법인에 대해서는 187,500 유로의 추가 벌금이 부과됨

14) (譯主) 프랑스법상 범죄는 위경죄, 경범죄(le délit), 중범죄(le crime)로 구분됨. 경범죄와 중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의 상한은 법률로 정함. 위경죄는 행정명령으로 정할 수 있음. 프랑스 형법상 위경죄(Contravention)는 의회가 아니라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명령(Décret)의 형식으로 금지행위의 구성요건을 정함.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3,000유로 미만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죄는 위경죄에 해당함. 위경죄에 대해서는 제1급부터 제5급까지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음. 제1급 위경죄에 대해서는 38유로 이하의 벌금, 제2급 위경죄에 대해서는 150유로 이하의 벌금, 제3급 위경죄에 대해서는 750유로 이하의 벌금, 제5급 위경죄에 대해서는 1500유로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제5급 위경죄의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경죄 누범은 경범죄(le délit)를 구성한다고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령 및 기타 행정명령에서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3,000유로 미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경범죄는 위경죄보다 중한 범죄로서 그 구성요건은 법률에서 정함. 프랑스 형법전 제131-13조 참조.

- 중사기죄의 경우 소비법전(제L.213-2조)에 따라 사기죄의 형을 2배로 가중 처벌함. 경범죄 (le délit)에 해당하는 중사기죄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야기하는 상품을 사용한 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을 요건으로 함. 법원은 자연인과 법인에게 중사기죄와 관련된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부가형으로 선고할 수 있음
 - 2013년 말고기 스캔들(쇠고기에 말고기를 섞어서 판매한 사건)에 의해서 경미한 제재의 수준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었음. 식품을 변질시키는 행위와 식품사기행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법전에 규정된 최고 수준의 형벌은 범법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불충분하다고 할 것임

3) 입법목적

- 현행 소비법전에 규정된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보다 더 위하적인 효과를 가지도록 하고, 위반행위와 제재 사이의 체계적인 일관성을 높이는 데 입법목적이 있음.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사기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법전상의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벌칙과의 비례관계를 재평가함. 여기에는 위조 범죄, 기망행위,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 과장광고, 약점의 남용 등이 포함됨

4) 가능한 입법방안

- 말고기 사건과 이 사건으로 인한 영향을 고려할 때, 의회의 입법자는 사기죄에 대한 형벌을 재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형벌을 강화하는 입법안을 제안함
 - 벌금의 상한을 개인의 경우 37,500 유로에서 300,000 유로로 높이고, 법인의 경우 187,500유로에서 1,500,000 유로로 높임
 - * 특정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영업이익을 고려하여 매출액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 자연인의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영업활동의 일부를 금지하거나 또는 위반행위가 가지는 불법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영업활동의 전부를 금지하는 추가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VI. 요약 및 시사점



- 프랑스는 본문에서 정리한 입법영향평가서의 내용에 기초하여 2014년 이후 단계적으로 국내 법을 개정하였음. 개정입법안의 내용은 2016년 3월 14일자 법률명령(포괄수권명령이라고도 함: Ordonnance) 제2016-301호를 통하여 공포됨. 개정법률은 201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함
- 프랑스는 1905년에 최초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1993년에 소비법전(Le Code de la consommation)의 형식으로 관련 법률을 편찬함으로써 시장의 상황과 거래관행의 변화에 대응해왔음
 - 1905년부터 현재까지 소비자법제 분야에서 전개되어 온 프랑스 법제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프랑스의 소비자법제 분야와 관련된 법률의 연혁은 아래와 다음과 같음

- Loi du 1er août 1905 sur la répression des fraudes dans la vente des marchandises et des falsifications des denrées alimentaires et des produits agricoles (plusieurs fois modifiée).
 - ↳ 1905년 8월 1일자 상품판매에서 사기 및 식품과 농산물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제정 이후 여러 번 개정됨)
- Ordonnances du 30 juin 1945 n° 45-1483 relative au prix et no 45-1484 relative à la constatation, la poursuite et la répression des infractions à la législation économique.
 - ↳ 1945년 6월 30일자 가격에 관한 포괄수권명령(오르도녕스) 제45-1483호 및 경제법률에서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추심 및 제재에 관한 포괄수권명령(오르도녕스) 제45-1484호

■ Loi n° 48-1360 du 1er septembre 1948 (“loi de 48”) portant modification et codification de la législation relative aux rapports des bailleurs et locataires ou occupants de locaux d’habitation ou à usage professionnel et instituant des allocations de logement.

↳, 1948년 9월 1일자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주거시설 및 업무시설의 점유자의 관계 및 주거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법전 편제에 관한 법률 제48-1360호

■ Loi n° 65-557 du 10 juillet 1965 fixant le statut de la copropriété des immeubles bâtis (plusieurs fois modifiée).

↳, 1965년 7월 10일자 건물의 공동소유에 관한 법률 제65-557호(제정 이후 여러 번 개정됨)

■ Loi n° 72-1137 du 22 décembre 1972 relative à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en matière de démarchage et de vente à domicile.

↳, 1972년 12월 22일자 방문판매 및 가정판매에서 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72-1137호

■ Loi n° 73-1193 du 27 décembre 1973 (“loi Royer”) modifiée d’orientation du commerce et de l’artisanat (publicité mensongère, action civile des organisations de consommateurs, urbanisme commercial).

↳, 1973년 12월 27일자 상거래 및 가내장인업(家内匠人業)의 방침에 관한 개정 법률 제73-1193호(허위광고, 소비자단체의 민사소송, 도심상업시설 관련 사항을 포함)(일명 ‘Royer 법률’) *도심상업시설에 관한 최초의 법률이며, 도심에서 대규모상업시설이 도입됨에 따라 소규모판매상의 영업이 위축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됨)

■ Loi n° 78-22 du 10 janvier 1978 (“1re loi Scrivener”) modifiée relative à l’information et à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dans le domaine de certaines opérations de crédit.

↳, 1978년 1월 10일자 특정 신용대부에서의 소비자의 보호와 정보에 관한 개정 법률 제 78-22호(일명 ‘제1차 Scrivener 법률’)

■ Loi n° 78-23 du 10 janvier 1978 (“2e loi Scrivener”) modifiée sur la protection et l’information des consommateurs de produits et de services (qualification des produits, clauses abusives).

↳, 1978년 1월 10일자 제품과 서비스 관련 소비자의 보호와 정보에 관한 개정 법률 제 78-23호(일명 ‘제2차 Scrivener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i n° 79-596 du 13 juillet 1979 relative à l'information et à la protection des emprunteurs dans le domaine immobilier.
<p>↳ 1979년 7월 13일자 부동산 영역에서 차주의 보호와 정보에 관한 법률 제79-596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i n° 82-526 du 22 juin 1982 relative aux droits et obligations des locataires et des bailleurs ("loi Quilliot", remplacée par la loi no 86-1290 du 23 décembre 1986, puis par la loi no 89-462 du 6 juillet 1989).
<p>↳ 1982년 6월 22일자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률 제82-526호(일명 'Quilliot' 법률. 이 법률은 1986년과 1989년에 연이어 개정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i n° 83-660 du 21 juillet 1983 relative à la sécurité des consommateurs et modifiant diverses dispositions de la loi du 1er août 1905.
<p>↳ 1983년 7월 21일자, 1905년 8월 1일자 법률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법률 제83-660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donnance n° 86-1243 du 1er déc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p>↳ 1986년 12월 1일자 가격의 자유와 경쟁에 관한 포괄수권명령(오르도닝스) 제86-1243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i n° 88-14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x actions en justice des associations agréées de consommateurs et à l'information des consommateurs.
<p>↳ 1988년 1월 5일자 소비자단체(승인된 소비자단체)의 소송행위와 소비자정보에 관한 법률 제88-14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i n° 88-21 du 6 janvier 1988 relative aux opérations de télépromotion avec offres de vente, dites "téléachat".
<p>↳ 청약의 유인이 포함된 텔레비전판촉, 일명 '방송판매(홈쇼핑)'에 관한 법률 제88-21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i n° 89-421 du 23 juin 1989 relative à l'information et à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ainsi qu'à diverses pratiques commerciales (démarchage par téléphone, loteries publicitaires, agences matrimoniales.
<p>↳ 다양한 유형의 판촉활동(전화통신판매, 복권/추첨광고, 결혼중개소) 소비자의 보호와 정보에 관한 법률 제89-421호</p>

■ Loi no 89-462 du 6 juillet 1989 tendant à améliorer les rapports locatifs et portant modification de la loi 86-1290 du 23 décembre 1986.

↳ 1989년 7월 6일자, 1986년 12월 23일자 법률의 개정과 임대차관계의 개선에 관한 법률 제89-462호

■ Loi n° 89-1010 du 31 décembre 1989 (“loi Neiertz”) relative à la prévention et au règlement des difficultés liées au surendettement des particuliers et des familles.

↳ 1989년 12월 31일자 개인과 가족의 과대채무로 인한 곤경의 해결과 예방에 관한 법률 제89-1010호(일명 ‘Neiertz 법률’)

■ Loi n° 92-60 du 18 janvier 1992 relative à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information précontractuelle, délais de livraison, publicité comparative).

↳ 1992년 1월 18일자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2-60호(사전 계약 정보, 인도의 기한, 비교광고)

■ Loi n° 93-949 du 26 juillet 1993 relative au code de la consommation (partie législative).

↳ 1993년 7월 26일자 소비법전에 관한 법률 제93-949호(법률편)

■ Loi n° 94-442 du 3 juin 1994 modifiant le code de la consommation en ce qui concerne la certification des produits industriels et des services et la commercialisation de certains produits.

↳ 1994년 6월 3일자 공산품과 서비스의 인증 및 일부 제품의 상품화에 관한 소비법전의 개정에 관한 법률 제94-442호

■ Loi n° 95-96 du 1er février 1995 concernant les clauses abusives et la présentation des contrats et régissant diverses activités d'ordre économique et commercial.

↳ 1995년 2월 1일자 불공정조항, 청약 및 경제상업회의소의 활동에 관한 법률 제95-96호

■ Loi n° 98-389 du 19 mai 1998 relative à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 1998년 5월 19일자 결함제품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결과책임)에 관한 법률 제98-38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i n° 98-535 du 1er juillet 1998 relative au renforcement de la veille sanitaire et du contrôle de la sécurité sanitaire des produits destinés à l'homme.
<p>↳ 1998년 7월 1일자 사람이 사용하는 제품의 위생안전의 관리와 위생감독의 강화에 관한 법률 제98-535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i n° 98-657 du 29 juillet 1998 d'orientation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s exclusions (prévention des expulsions, protection des locataires de meublés)
<p>↳ 1998년 7월 29일자 퇴거조치로부터 보호하는 법률(퇴거조치의 예방, 가구 등 주거용 설비가 갖추어진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보호) 제98-657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i n° 2000-1208 du 13 décembre 2000 ("loi SRU") relative à la solidarité et au renouvellement urbains (protection de l'acquéreur immobilier, logement décent, protection des occupants de logements-foyers.
<p>↳ 2000년 12월 13일자 도시의 연대와 재생에 관한 법률 제2000-1208호(일명 'SRU 법률') (부동산 승계인의 보호, 정숙한 주거, 주거시설 점유자의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donnance n° 2001-741 du 23 août 2001 (transposition des directives en matière de publicité comparative, vente à distance, clauses abusives, actions en cessation des associations).
<p>↳ 2001년 8월 23일자 비교광고, 원격판매, 남용적 조항, 단체의 계약해지권 행사에 관한 유럽지침의 이행을 위한 포괄수권명령(오르도닝스) 제2001-741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i n° 2001-1168 du 11 décembre 2001 ("loi Murcef") portant mesures urgentes de réformes à caractère économique et financier (relations entre banques et clients).
<p>↳ 2001년 12월 11일자 경제와 재정의 특성(은행과 고객의 관계)에 관한 긴급개혁조치를 도입하는 법률 제2001-1168호(일명 'Murcef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i n° 2002-303 du 4 mars 2002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à la qualité du système de santé.
<p>↳ 2002년 3월 4일자 환자의 권리와 보건의료체계의 품질에 관한 법률 제2002-303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i n° 2003-706 du 1er août 2003 relative à la sécurité financière (crédit, comité consultatif des services financiers, démarchage bancaire ou financier).
<p>↳ 2003년 8월 1일자 재정안정(신용, 금융서비스 자문활동, 은행상품 또는 금융상품의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제2003-706호</p>

■ Loi n° 2003-710 du 1er août 2003 d'orientation pour la ville et la rénovation urbaine (faillite civile).

↳, 2003년 8월 1일자 도시와 도심재생의 방침에 관한 법률(민사파산 관련) 제2003-710호

■ Loi n° 2004-575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

↳, 2004년 6월 21일자 디지털경제에서의 신뢰에 관한 법률 제2004-575호

■ Loi n° 2005-67 du 28 janvier 2005 ("loi Chatel") tendant à conforter la confiance et la protection du consommateur (modalités de résiliation des contrats renouvelables par tacite reconduction et autres dispositions).

↳, 2005년 1월 28일자 소비자 신뢰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묵시적 계약의 갱신에서 해지권의 행사방법 및 기타 조항) 제2005-67호(일명 'Chatel 법률')

■ Ordonnance n° 2005-136 du 17 février 2005 relative à la garantie de conformité du bien au contrat due par le vendeur au consommateur.

↳, 2005년 2월 17일자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한 계약에서 물건의 적합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05-136호

■ Loi constitutionnelle n° 2005-205 du 1er mars 2005 relative à la Charte de l'environnement.

↳, 2005년 3월 1일자 환경헌장에 관한 헌법법률 제2005-205호

■ Ordonnance n° 2005-648 du 6 juin 2005 relative à la commercialisation à distance de services financiers auprès des consommateurs.

↳, 2006년 6월 6일자 소비자 대상 원격 금융서비스의 상업화에 관한 법률 제2005-648호

■ Ordonnance n° 2005-1086 du 1er septembre 2005 instaurant un règlement transactionnel pour les contraventions au code de commerce et au code de la consommation et portant adaptation des pouvoirs d'enquête et renforcement de la coopération administrative en matière de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 2005년 9월 1일자 상법전 및 소비자법전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해결을 도입하고, 소비자보호 영역에서 조사권을 실행하며 행정의 협력을 강화하는 법률 제2005-108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donnance n° 2005-174 du 24 février 2005 relative à l'organisation et à la vente de voyages et de séjours.
<p>↳ 2005년 2월 24일자 여행 및 체류 상품의 판매와 조직에 관한 법률 제2005-174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i n° 2006-406 du 5 avril 2006 relative à la garantie de conformité du bien au contrat due par le vendeur au consommateur et à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p>↳ 2006년 4월 5일자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한 계약에서 물건의 적합성 보장 및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 제2006-406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i n° 2006-437 du 14 avril 2006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relatives au tourisme.
<p>↳ 2006년 4월 14일자 관광여행에 관한 일련의 규정을 도입하는 법률 제2006-437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i n° 2006-872 du 13 juillet 2006 portant engagement national pour le logement.
<p>↳ 2006년 7월 13일자 주거권을 위한 국민대참여 법률 제2006-872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i n° 2006-1537 du 7 décembre 2006 relative au secteur de l'énergie (modifiée à plusieurs reprises notamment par la loi n° 2010-607 du 7 juin 2010 autorisant les petits consommateurs domestiques et non domestiques d'électricité et de gaz naturel à accéder ou à retourner au tarif réglementé et la loi n° 2010-1488 du 7 décembre 2010 portant nouvelle organisation du marché de l'électricité (1).
<p>↳ 2006년 12월 7일자 에너지분야에 관한 법률 제2006-1537호(이후 여러 번 개정됨. 특히 2010년 6월 7일자 전기와 가스를 소량 소비하는 가계소비자 또는 비가계소비자가 기준요금을 신청하거나 또는 기준요금을 소급하여 적용해 줄 것을 신청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 제2010-607호 및 2010년 12월 7일자 전력시장의 조직 개편에 관한 법률 제2010-1488호에 의해 개정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i n° 2007-131 du 31 janvier 2007 relative à l'accès au crédit des personnes présentant un risque aggravé de santé.
<p>↳ 2007년 1월 31일자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가 있는 자의 신용(대부)이용에 관한 법률 제2007-131호</p>

■ Loi n° 2007-290 du 5 mars 2007 instituant le droit au logement opposable et portant diverses mesures en faveur de la cohésion sociale.

↳, 2007년 3월 5일자 대항력 있는 주거권의 승인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일련의 조치에 관한 법률 제2007-290호

■ Loi n° 2007-1774 du 17 décembre 2007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d'adaptation au droit communautaire dans les domaines économique et financier (pouvoirs d'injonction de cessation de tout agissement illicite ou de supprimer toute clause illicite, pouvoir de saisine du juge pour la suppression d'une clause illicite ou abusive).

↳, 2007년 12월 17일자 경제 및 재정 영역에서 공동체법의 적용을 위한 일련의 규정을 도입하는 법률 제2007-1774호(일체의 불법적인 행위의 금지 또는 위법한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금지청구권 및 남용적 조항과 위법한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제소권)

■ Loi n° 2008-3 du 3 janvier 2008 ("loi Chatel") pour le développement de la concurrence au service des consommateur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crédit à la consommation, vente à distance, soulevé d'office par le juge, habilitation pour une refonte du code de la consommation).

↳, 2008년 1월 3일자 소비자 대상 서비스의 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08-3호(일명 'Chatel 법률')(전자통신, 소비자신용, 원격판매, 소비자자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서 법원에 의한 직권심리, 소비법전의 개정을 위한 수권(권한부여))

■ Loi n° 2008-776 du 4 août 2008 de modernisation de l'économie (pratiques commerciales déloyales, clauses abusives, prestations de service après-vente, énergie, sécurité des produits, certification de produit ou de service, surendettement).

↳, 2008년 8월 4일자 경제현대화에 관한 법률 제2008-776호(불공정 상거래관행, 남용적 조항, 판매 후 서비스제공, 에너지, 제품안전, 제품과 서비스의 인증, 과다채무)

■ Ordonnance n° 2008-810 du 22 août 2008 complétant la transposition de la directive 2001/95/CE du 3 décembre 2001 relative à la sécurité générale des produits.

↳, 2008년 8월 22일자 제품안전에 관한 2001년 12월 3일자 유럽지침 제2001/95/CE호의 이행에 관한 포괄수권명령(오르도넝스) 제2008-8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i n° 2009-323 du 25 mars 2009 de mobilisation pour le logement et la lutte contre l'exclusion.
<p>↳ 2009년 3월 25일자 주거 및 퇴거조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법률 제2009-323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i n° 2009-526 du 12 mai 2009 de simplification et de clarification du droit et d'allègement des procédures (choix du tribunal par le consommateur, obligation générale d'information).
<p>↳ 2009년 3월 12일자 소송절차의 촉진과 권리의 명확화 및 단순화에 관한 법률 제2009-526호(소비자에 의한 재판소의 선택, 일반적인 정보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Grenelle 1").
<p>↳ 2009년 8월 3일자 그르넬환경선언의 이행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법률 제2009-967호 (일명 제1차 그르넬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i n° 2009-888 du 22 juillet 2009 de développement et de modernisation des services touristiques.
<p>↳ 2009년 7월 22일자 여행서비스의 현대화와 발전에 관한 법률 제2009-888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i n° 2009-879 du 21 juillet 2009 portant réforme de l'hôpital et relative aux patients, à la santé et aux territoires.
<p>↳ 2009년 7월 21일자 병원, 환자, 보건 및 지역의 개혁 법률 제2009-879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donnance n° 2010-177 du 23 février 2010 de coordination avec la loi n° 2009-879 du 21 juillet 2009 portant réforme de l'hôpital et relative aux patients, à la santé et aux territoires.
<p>↳ 2010년 2월 23일자, 2009년 7월 21일자 병원, 환자, 보건 및 지역의 개혁 및 법률 제2009-879호와의 조정을 위한 포괄수권명령(오르도넝스) 제2010-177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i n° 2010-737 du 1er juillet 2010 ("loi Lagarde") portant réforme du crédit à la consommation.
<p>↳ 2010년 7월 1일자 소비신용(자동차, 주택과 같이 지출규모가 큰 소비재를 구매할 때 제공하는 신용)의 개혁에 관한 법률 제2010-737호(일명 'Lagarde 법률')</p>

<p>■ Loi n° 2010-788 du 12 juillet 2010 portant engagement national pour l'environnement ("Grenelle 2").</p>
<p>↳ 2010년 7월 12일자 환경에 관한 국가적인 참여를 위한 법률 제2010-788호(일명 제2차 그르넬법)</p>
<p>■ Loi n° 2010-1249 du 22 octobre 2010 de régulation bancaire et financière (modifie notamment la loi Lagarde).</p>
<p>↳ 2010년 10월 22일자 금융 및 은행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010-1249호('Lagarde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임)</p>
<p>■ Loi n° 2010-1488 du 7 décembre 2010 portant nouvelle organisation du marché de l'électricité.</p>
<p>↳ 2010년 12월 7일자 전력시장의 개편에 관한 법률 제2010-1488호</p>
<p>■ Loi n° 2011-525 du 17 mai 2011 de simplification et d'amélioration de la qualité du droit (pratiques commerciales déloyales, loteries, vente sans commande préalable, vente subordonnée.)</p>
<p>↳ 2011년 3월 17일자 권리(불공정한 상관행, 복권, 사전주문이 없는 판매, 결합판매)의 내용을 단순화하고 개선하는 법률 제2011-525호</p>
<p>■ Loi n° 2011-940 du 10 août 2011 modifiant certaines dispositions de la loi n° 2009-879 du 21 juillet 2009 portant réforme de l'hôpital et relative aux patients, à la santé et aux territoires.</p>
<p>↳ 2011년 8월 10일자, 2009년 7월 21일자 병원, 환자, 보건 및 지역의 개혁 및 법률 제2009-879호의 개정 법률 제2011-940호</p>
<p>■ Ordonnance n° 2011-1012 du 24 août 2011 relative aux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protection des données personnell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p>
<p>↳ 2011년 8월 24일자 전자통신에 관한 법률 제2011-1012호(개인정보보호, 전자통신)</p>
<p>■ Loi n° 2011-2012 du 29 décembre 2011 relative au renforcement de la sécurité sanitaire du médicament et des produits de santé.</p>
<p>↳ 2011년 12월 29일자 의약품 및 보건용품의 위생안전의 강화에 관한 법률 제2011-2012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i n° 2012-375 du 19 mars 2012 relative à l'organisation du service et à l'information des passagers dans les entreprises de transport aérien de passagers et à diverses dispositions dans le domaine des transports.
<p>↳ 2012년 3월 19일자 항공여객운송회사의 여객서비스 편성과 여객에 관한 정보 및 기타 운송과 관련 규정에 관한 법률 제2012-375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i n° 2012-1460 du 27 décembre 2012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principe de participation du public défini à l'article 7 de la Charte de l'environnement.
<p>↳ 2012년 12월 27일자 환경헌장 제7조에 정의된 공중의 참여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 제2012-1460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i n° 2013-343 du 24 avril 2013 renforçant l'information des voyageurs lors de la commercialisation de titres de transport sur les compagnies aériennes figurant sur la liste noire de l'Union européenne.
<p>↳ 2013년 4월 24일자 유럽연합의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항공회사의 승차권을 거래하는 경우 여행자 정보를 강화하는 법률 제2013-343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i n° 2013-453 du 3 juin 2013 visant à garantir la qualité de l'offre alimentaire en outre-mer.
<p>↳ 2013년 6월 3일자 프랑스령 해외도에서 식품공급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 2013-453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i n° 2013-672 du 26 juillet 2013 de séparation et de régulation des activités bancaires.
<p>↳ 2013년 7월 26일자 은행업의 규제와 분리에 관한 법률 제2013-672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i n° 2014-344 du 17 mars 2014 ("loi Hamon") relative à la consommation.
<p>↳ 2014년 3월 17일자 소비에 관한 법률 제2014-344호(일명 'Hamon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i n° 2014-366 du 24 mars 2014 ("loi ALUR") pour l'accès au logement et un urbanisme rénové.
<p>↳ 2014년 3월 24일자 주거접근권과 신도시에 관한 법률 제2014-366호</p>

■ Loi n° 2015-990 du 7 août 2015 (“loi Macron”) pour la croissance, l’activité et l’égalité des chances économiques.

↳ 2015년 8월 7일자 성장, 활동 및 경제적 기회의 평등에 관한 법률 제2015-990호(일명 ‘마크롱법률’)

■ Loi n° 2015-992 du 17 août 2015 relative à la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

↳ 2015년 8월 17일자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관한 법률 제2015-992호

■ Ordonnance n° 2015-1033 du 20 août 2015 relative au règlement extrajudiciaire des litiges de consommation.

↳ 2015년 8월 20일자 소비분쟁의 재판외 해결에 관한 법률 제2015-1033호

■ Loi n° 2016-41 du 26 janvier 2016 (“loi Santé”) de modernisation de notre système de santé.

↳ 2016년 1월 26일자 보건의료체계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 제2016-41호(일명 ‘보건법’)

입법평가 Issue Paper 17-15-⑦

프랑스 소비자법제 분야 입법평가 사례 분석

발행일 2017년 10월 31일

발행인 이익현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044)861-0300 F.044)868-9913

등록번호 1981.8.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1.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2. 이 책자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978-89-6684-780-8 93360

프랑스 소비자법제 분야 입법평가 사례 분석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044)861-0300 F.044)868-9913 <http://www.klri.re.kr>



ISBN 978-89-6684-780-8
값 5,500원